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해외 영화업자 등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83)

2025. 1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해외 영화업자 등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현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3.

다. 회 부 일 : 2025.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채 영화 및 비디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 분류 의무나 불법비디오물 유통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이용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등급분류의 이행과 불법비디오물 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대리 수행하게 하여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함(안 제 9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외 영화업자 등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가. 개정안 요지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92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92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u> <u>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로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 <u>1.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의 이행</u> <u>2. 제50조에 따른 등급분류의 이행</u> <u>3. 제53조에 따른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의무</u>

이행

②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법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와 같은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 OTT 사업자에게 국내 규제를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및 이용자 보호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타 입법례¹⁾]

구분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게임산업법 (제31조의 2)
대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게임사업자
목적	국내의 이용자 보호 관련 책임의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	이용자는 언어 등의 사유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고 규제기관은 법령 위반 시 자료확보 등이 용이하지 않아 집행력 강화 필요	국외(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규제집행력 강화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
대리업무	과기부·방통위에서 요구하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수단의 확보,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게임물 사후관리보고(게임물유통질서 확립, 게임물 사행행위예의 이용방지, 게임물사행성조장방지), 게임물 표시의무 이행
미지정시 제재수단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 개정안은 해외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등급분류의무, 불법비디오물 유통방지의무 등의 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의 이행’은 영화상영등급분류 신청 자체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을 가진 영화업자(수입·배급·제작·상영)만 가능하므로, 해외사업자를 대리해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제53조에 따른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의무 이행’은 사업자가 하지 않아야 하는 ‘부작위 의무’로서, 이를 국내대리인이 ‘대리 수행’한다는 개념이 ‘대리’의 사전적·법률적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 법률의 국내대리인 제도에서는 대체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재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의 제재 규정의 필요성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대리인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 관련 산업 생태계 및 이용자 선택권에 대한 영향 분석, 국제통상규범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 해외 사례는 [참고] 자료 참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는 본 개정안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해외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부과하여 투자와 이용자 선택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현지 주재 요구를 금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제12.5조와의 불합치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1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해외 사례

구분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 규칙(GDPR) 제27조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DSA) 제11조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NetzDG) 제5조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지정 방법	서면	서면	-	서면
적용 대상	유럽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러한 처리활동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있거나 유럽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 행동에 대한 감시와 관련 있는 유럽연합 역외에 설립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	유럽연합에 시설이 없지만 유럽연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	소셜네트워크 제 공사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일본 국내에 있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국외사업자
대리 인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 중 하나에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	독일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국내 자회사나 변호사 등 사외의 자 지정 가능)
대리 인 역할	GDPR에 규정된 의무 대신 이행, 관찰 감독기관 및 정보주체와 협력,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집행절차 적용	회원국의 당국, 위원회 및 이사회가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령한 결정의 수령, 준수 및 집행에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제공자를 대신하여 수신, 회원국 당국, 위원회 및 이사회와 협력하고 결정을 준수	불법 콘텐츠의 유포 또는 불법 콘텐츠의 유통과 수령으로 인해 특히 삭제된 콘텐츠의 복구 또는 콘텐츠의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벌금 절차에 따른 송달과 독일 법원의 법적 절차에 따른 송달, 사법 결정 또는 개시하는 문서의 송달, 국내 형사소추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응답	총무대신이 실시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통지와 법위반 행위자의 공표에 앞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한 통지를 대리 수령, 총무성과 국외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연락에 대한 컨택포인트
벌칙	-	-	과태료 (최대 50만 유로)	등록 또는 신고 불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참고 2

타 부처, 협회, 민간업계 등 의견

□ 영상물등급위원회 의견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영상물 등급위원회	• (국내 대리인의 업무범위 조정 필요) - <제29조 영화 상영등급분류 이행 제외> 영화 상영 등급분류 신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소유하고 관할 시군구에 영화업자(수입, 배급, 제작, 상영)로 신고한 자에 한해 가능하며, 현재 해외 영화의 국내배급과 상영은 해외직배사, 국내판권을 가진 수입배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대리인의 업무에서 제외 필요 - <제53조에 따른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의무 이행 제외> 불법 비디오물의 판매 금지는 사업자의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한 '작위업무'가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지 않아야 하는 '부작위 업무'에 해당되며, '누구든지'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으로 국내 대리인이 이를 대신하게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함 •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국내 대리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해외사업자 특성상 이를 지정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대리인 지정 위반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을 위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 신설 필요(유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미지정시 2천만원 과태료 부과)

□ 미국영화협회(MPA Korea) 의견

Motion Picture Association (이하 “엠피에이”)은 7개의 영화 및 TV 콘텐츠의 글로벌 제작·배급사를 대표하는 협회입니다.

(회원사: 아마존 스튜디오(Amazon Studios LLC), 월트디즈니 스튜디오(Walt Disney Studios); 넷플릭스(Netflix Studios, LLC); 파라마운트 픽처스(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Universal City Studios, LLC);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엠피에이의 회원사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극장 및 주문형 비디오(이하 “VOD”)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영화와 TV 콘텐츠를 제작 및 배급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3, 이하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엠피에이 회원사는 한국 영상산업의 성장과 발전 지원에 노력해 왔고, 특히 이미 한국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 콘텐츠를, 책임감을 갖고 자체등급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글로벌 모범 사례에 따라 회원사의 VOD 서비스에 의해 전문적으로 큐레이션 되고 권리 보유 또는 라이선스 받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소비자 피드백과 잠재적 문제를 접수받고 해결하기 위한 연락 창구를 운영하는 등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과 다채널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화업자 즉, 저희 회원사가 운영하는 VOD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자에게 한국 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먼저, 이러한 규정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회원사는 이미 국내대리인이나 현지 주재가 필요하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과도한 국내대리인 요건을 도입하는 것은 사업상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한국 콘텐츠와 창작 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진입 또는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국에 대한 국제적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과 선택권을 제한하며, 나아가 한국의 창작 및 문화 산업 육성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제12.5조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통상 의무와의 비 합치 우려가 있습니다.

(제 12.5 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 가능성”으로 인해 최근 한미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원칙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ember 13.)

본 개정안에서 규정한 국내대리인 요건은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신규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중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한국 내 불법복제 증가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1년 발표된 Frontier Economics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VOD 이용자 중 상당수(약 5분의 1)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불법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후 해당 비율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복제 행위는 투자 수익을 감소시키고 창작 동기와 신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한국 영상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적 사업 수익 감소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베트남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과도한 국내대리인 규제 요건을 포함한 비우호적인 규제 환경으로 인해, 한 주요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다른 많은 사업자 역시 해당 시장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고 국내외 서비스의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며 콘텐츠 산업과 더 넓은 경제 전반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베트남에서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시행된 이후 불법복제가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엠피에이는 한국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글로벌 VOD 서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본 개정안 도입에 반대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개정안 검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